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 처벌 신설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0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 처벌 신설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 처벌 신설

개정안은 현행 제11조제2항을 각 호로 구체화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운반하여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할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생략)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
<신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기 위하여 소지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 운반 · 광고 · 소개한 자</u> 3. <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u> 4. <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운반하여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할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u>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이라 함)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행법 제11조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도 6801)함.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전을 받아도 음란영상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11조제2항의 목적성 소지죄는 적용할 수 없

고 제11조제5항에 따른 단순 소지죄¹⁾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개정안은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란 문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의 유통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같은 항 제2호에 명확히 규정하고, 성착취물을 소지·운반하여 이를 판매 등을 할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목적성 소지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²⁾와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소지죄³⁾를 경합⁴⁾하여 최대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타인을 기망하고 성착취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으므로 일반 사기나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보다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아

1)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기본적으로 법정형 상향 등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⁵⁾

다만,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사기행위는 성착취물을 유통할 의사가 없으므로 성착취물의 전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경우부터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경우까지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영리 목적, 성착취물의 전파효과, 행위의 능동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바,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행위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여 처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6헌바16 결정 참조

<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처벌 >

구성요건	형량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구입 또는 알면서 소지·시청(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매매하게한 죄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법」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을 산 죄 등이 있음.

< 5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규정 >

법률명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②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제6조(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명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⁶⁾ 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한 자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39조(벌칙)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둘째,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그 특성이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사기죄에서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주로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별법에서 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⁷⁾하고 있고 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 생략)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기통신금융사기죄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음.

< 사기죄의 특별규정 사례 >

법률명	구성요건	형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행위로 인한 이득액 - 5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이득액 - 5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사기를 행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셋째, 대법원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양형에 참작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참고자료 참조),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을 규정할 경우 법관이 법률상 감경⁹⁾이나 작량감경¹⁰⁾을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¹¹⁾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9) 법률상의 감경이라 함은 심신장애자의 범죄라든가 미수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함. 「형법」 제55조는 법률상의 감경의 순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0)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하면,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측면에서 일반 사기나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보다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사기행위는 성착취물을 다른 이에게 유통하지 않는다는 점, 현행법은 사기행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큰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유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재산 이득만을 취한 사기 범죄는 범죄결과 측면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한 성범죄보다는 재산범죄와 관련되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등을 적용하여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이 소지죄가 적용되는 총기, 마약 등도 높은 불법성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사기행위에 대해 해당 관리법률에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의 기망수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형법 등 사기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막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범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 임범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